

## 日本の 學校設置基準

### The Standard of School Facilities in Japan

李 演 生\*

Lee, Youn-Saeng

일본의 문부과학성은 2002년3월29일자로 교육 개혁국민회의의 제언과 「21세기교육신생플랜1)」을 토대로 사립학교의 설치촉진을 포함하여 다양한 소·중학교의 설치를 촉진하는 관점으로 소학교설치기준 및 중학교설치기준을 새롭게 제정했다.

제정에 즈음하여 설치기준을 최저기준으로 하고 지역의 실정에 따른 대응이 가능하도록, 또한 설치자의 다양한 교육이념을 실현하는 관점에서 가능한 한 탄력적이며 대강(大綱)적인 규정으로 제정하였다.

#### 1. 제정의 주요 내용

가. 【자기평가 및 정보제공】 학교의 자기평가 실시와 그 결과의 공표를 위한 노력규정 및 적극적인 정보제공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였다.

나. 【학급편제】 1학급당 아동(학생)수는 원칙으로서 40인 이하로 한다. 단, 특별한 사정이 있고, 교육상 지장이 없는 경우의 예외규정을 마련하였다.

다. 【교사 및 운동장의 면적】 교육에 필요한 최저한의 기준을 규정함과 함께 지역의 여건 등을 기초로 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예외 규정을 마련하였다.



환경을 고려한 학교시설사업에 의해 신축된 학교(예)

라. 【필요한 시설】 각종의 특별교실 등 필요한 시설에 관하여는 필요 최소한의 記述에 한하고 大綱적으로 명시하였다.

마. 【타교 등의 시설설비의 사용】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는 다른 학교 등의 시설설비의 사용을 인정하는 것을 명시하였다.

바. 【겸무】 교원 등은 다른 학교의 교원 등의 職과 겸직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명시하였다.

#### 2. 시행일

2002년4월1일. 단, 편제 및 시설·설비에 관계된 사항에 관하여는 2003년4월1일로 한다.

#### 3. 기타사항

소학교 및 중학교설치기준의 제정에 병행하여, 고등학교설치기준, 유치원설치기준, 전수학교설치기준 및 각종학교규정도, 자기평가 및 정보제공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였다.

\* 정회원, 일본 큐슈대학 박사과정(교육인적자원부 사무관)  
1) 21세기를 맞아 「신생일본」의 실현을 지향하여 국정의 최고중요과제의 하나로 「교육개혁의 캐치프레이즈인 「학교가 좋아진다. 교육이 바뀐다」 사업을 구체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타임스케줄을 명확하게 하여 놓은 것으로 2001년을 교육신생元年으로 개혁을 추진하고 있음

문부과학성령 제14호

학교교육법(1947년 법률 제26호)제3조의 규정을 근거로 소학교설치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2002년3월29일  
문부과학성대신

소학교설치기준

목차

- 제1장 총칙(제1조-제3조)
- 제2장 편제(제4조-제6조)
- 제3장 시설 및 설비(제7조-제12조)
- 부칙

제1장 총칙

제1조 (취지)

1. 소학교는 학교교육법(1947년 법률 제26호), 그 외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는 외에 이 성령(省令)의 규정에 의해 설치하는 것으로 한다.

2. 이 성령에 정하는 설치기준은 소학교를 설치하는데 필요한 최저의 기준으로 한다.

3. 소학교의 설치기준은 소학교의 편제, 시설, 설비 등이 이 성령에 정하는 설치기준 이하가 되는 상태가 되지 않도록 함은 물론이고 이의 수준의 향상을 도모하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제2조 (자기평가 등)

1. 소학교는 그 교육수준의 향상을 도모하여 해당소학교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해당소학교의 교육활동 그 외 학교운영의 상황에 관하여 스스로 점검 및 평가를 행하여, 그 결과를 공표 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으로 한다.

2. 전 항의 점검 및 평가를 실행함에 있어 동항의 취지에 적절한 항목을 설정하여 실행하는 것으로 한다.

제3조 (정보의 적극적인 제공)

소학교는 해당 소학교의 교육활동, 그 외 학교 운영의 상황에 관하여 보호자 등에 대한 적극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

제2장 편제

제4조(1학급의 학생 수)

1학급의 학생 수는 법령에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40인 이하로 한다. 단, 특별한 사정이

있고 동시에, 교육상의 지장이 없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학급의 편제)

소학교의 학급은 같은 학년의 학생으로 편제하는 것으로 한다. 단,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여러 학년의 아동을 한 학급에 편성하는 것도 가능하다.

제6조(교사의 수 등)

① 소학교에 두는 교사의 수는 1학급당 1인 이상으로 한다.

② 전 항의 교사는 특별한 사정이 있고, 동시에 교육상 지장이 없는 경우는 교장 혹은 교감이 겸직 또는 준교사 혹은 강사를 두고 이를 대신할 수 있다.

③ 소학교에 두는 교원 등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다른 학교의 교원 등과 겸직하는 것이 가능하다.

제3장 시설 및 설비

제7조(일반적 기준)

소학교의 시설 및 설비는 지도, 보건, 안전 및 관리상 적절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제8조(校舍 및 운동장의 면적 등)

① 교사 및 운동장의 면적은 법령에 특별히 정하여진 경우를 제외하고 별표에 정하는 면적이상으로 한다. 단, 지역의 실태 및 그 외의 특별한 사정이 있고, 동시에 교육상 지장이 없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교사 및 운동장은 동일 부지 내 또는 인접하는 위치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지역의 실태 그 외에 사유에 의한 특별한 사정이 있고 동시에 교육상 및 안전상 지장이 없는 경우는 그 외의 적당한 위치에 이것을 설치하는 것이 가능하다.

제9조(校舍에 구비하여야 할 시설)

① 교사에는 적어도 다음의 시설을 구비하는 것으로 한다.

가. 교실(보통교실, 특별교실 등으로 한다.)

나. 도서실. 양호실

다. 직원실

② 교사에는 전 항에 제시한 시설이외에 필요에 따라 특수학급을 위한 교실을 구비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그 외의 시설)

소학교에는 교사 및 운동장외에 체육관을 구비하는 것으로 한다. 단, 지역의 실태 그 외의 특별한 사정이 있고 동시에, 교육상 지장이 없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校具 및 敎具)**

① 소학교에는 학급 수 및 아동 수에 따라 지도, 보건위생 및 안전상 필요한 종류 및 수량의 校具 및 敎具 구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

② 전 항의 校具 및 敎具는 항상 개선하고 보충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제12조(다른 학교 등의 시설기준 및 설비의 사용)**

소학교는 특별한 사정이 있고 동시에 교육상 지장이 없는 경우는 다른 학교 등의 시설 및 설비를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부 칙**

**(시행기일 등)**

1. 이 성령은 2002년4월1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2장 및 제3장의 규정(학교교육법시행규칙(1947년문부성령제11호)제16조의 개정규정을 제외) 및 별표의 규정은 2003년4월1일부터 시행한다.

2. 제2장 및 제3장의 규정 및 별표의 시행 시, 현재 존속하고 있는 소학교의 편제 및 시설·설비에 관하여는 당분간 종전의 관례에 따르는 것이 가능하다.

**(학교교육법시행규칙의 일부 개정)**

3. 학교교육법시행규칙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소학교의 설비, 편제 그 외 타 설치에 관한 사항은 이 절에 정하는 것 이외에 소학교설치기준(2002년문부과학성령제14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7조 중 「토지의 상황」을 「지역의 실태」로 바꾼다.

제19조부터 제22조까지를 다음과 같이 바꾼다.

**제19조부터 제22조**까지 삭제

제23조를 다음과 같이 바꾼다.

**제23조** 삭제

제55조 중 「~부터 제22조까지, 제22조 단서,」를 「, 제18조」로, 「제23조의3까지」를 「제22조의6까지, 제23조의2, 제23조의3」으로 바꾼다.

제65조의10제1항 중 「, 제23조부터 제23조의3까

지」를 「, 제23조의2, 23조의3」으로 바꾼다. 동 조 제②항 중 「제19조, 제20조,」를 삭제한다.

제73조의2를 다음과 같이 바꾼다.

**제73조의2** 맹학교, 농학교 및 양호학교의 소학부, 중학부 또는 고등부의 학급은 동 학년의 아동 또는 학생으로 편제하는 것으로 한다. 단,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수 학년의 아동 또는 학생을 1학급에 편제하는 것이 가능하다.

제73조의2의 다음에 다음의 2조를 첨가한다.

**제73조의2의2** 맹학교, 농학교 및 양호학교의 소학부에 있어서는 교장 이외 1학급당 교사 1인 이상을 두지 않으면 안 된다.

**제73조의2의3** 맹학교, 농학교 및 양호학교의 소학부, 중학부 또는 고등부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있고 동시에 교육상 지장이 없는 경우는 교장 혹은 교감이 교사를 겸하고, 또는 준교사 혹은 강사를 두어 교사를 대신하는 것이 가능하다.

제73조의16제②항 중 「제19조, 제22조 단서, 제23조,」를 삭제한다. 동 조 제③항 중 「제22조 본문,」을 삭제한다.

별표(제8조 관계)

가. 校舎의 면적

아동수	면적(m <sup>2</sup> )
1인 이상 40인 이하	500
41인 이상 480인 이하	500+5×(아동수-40)
481인 이상	2700+3×(아동수-480)

나. 운동장의 면적

아동수	면적(m <sup>2</sup> )
1인 이상 240인 이하	2400
241인 이상 720인 이하	2400+10×(아동수-240)
721인 이상	7200

문부과학성령 제15호

학교교육법(1947년 법률 제26호)제3조의 규정을 근거로 중학교설치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2002년3월29일  
문부과학성대신

**중학교설치기준**

목차

제1장 총칙(제1조-제3조)

제2장 편제(제4조-제6조)

제3장 시설 및 설비(제7조-제12조)

부칙

**제1장 총칙**

**제1조 (취지)**

1. 중학교는 학교교육법(1947년 법률 제26호), 그 외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는 외에 이 성령(省令)의 규정에 의해 설치하는 것으로 한다.

2. 이 성령에 정하는 설치기준은 중학교를 설치하는데 필요한 최저의 기준으로 한다.

3. 중학교의 설치기준은 중학교의 편제, 시설, 설비 등이 이 성령에 정하는 설치기준 이하가 되는 상태가 되지 않도록 함은 물론이고 이의 수준의 향상을 도모하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제2조 (자기평가 등)**

1. 중학교는 그 교육수준의 향상을 도모하고 당해 중학교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당해 중학교의 교육활동 그 외 학교운영의 상황에 관하여 스스로 점검 및 평가를 행하여,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으로 한다.

2. 전항의 점검 및 평가를 실행함에 있어 동항의 취지에 적절한 항목을 설정하여 실행하는 것으로 한다.

**제3조 (정보의 적극적인 제공)**

중학교는 당해 중학교의 교육활동, 그 외 학교운영의 상황에 관하여 보호자 등에 대한 적극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

**제2장 편제**

**제4조(1학급의 학생 수)**

1학급의 학생 수는 법령에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40인 이하로 한다. 단, 특별한 사정이 있고 동시에 교육상의 지장이 없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학급의 편제)**

중학교의 학급은 같은 학년의 학생으로 편제하는 것으로 한다. 단,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여러 학년의 아동을 한 학급에 편성하는 것도 가능하다.

**제6조(교사의 수 등)**

① 중학교에 두는 교사의 수는 1학급당 1인 이상으로 한다.

② 전항의 교사는 특별한 사정이 있고, 동시에

교육상 지장이 없는 경우는 교장 혹은 교감이 겸직 또는 준교사 혹은 강사를 두고 이를 대신할 수 있다.

③ 중학교에 두는 교원 등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다른 학교의 교원 등과 겸직하는 것이 가능하다.

**제3장 시설 및 설비**

**제7조(일반적 기준)**

중학교의 시설 및 설비는 지도, 보건, 안전 및 관리상 적절한 것이 아니면 안 된다.

**제8조(校舍 및 운동장의 면적 등)**

① 교사 및 운동장의 면적은 법령에 특별히 정하여진 경우를 제외하고 별표에 정하는 면적이상으로 한다. 단, 지역의 실태 및 그 외의 특별한 사정이 있고, 동시에 교육상 지장이 없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교사 및 운동장은 동일 부지 내 또는 인접하는 위치에 설치하는 것으로 한다. 단, 지역의 실태 그 외에 의한 특별한 사정이 있고 동시에 교육상 및 안전상 지장이 없는 경우는 그 외의 적당한 위치에 이것을 설치하는 것이 가능하다.

**제9조(校舍에 구비하여야 할 시설)**

① 교사에는 적어도 다음의 시설을 구비하는 것으로 한다.

가. 교실(보통교실, 특별교실 등으로 한다.)

나. 도서실. 양호실

다. 직원실

② 교사에는 전항에 제시한 시설이외에 필요에 따라 특수학급을 위한 교실을 구비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그 외의 시설)**

중학교에는 교사 및 운동장외에 체육관을 구비하는 것으로 한다. 단, 지역의 실태 그 외의 특별한 사정이 있고 동시에 교육상지장이 없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校具 및 敎具)**

① 중학교에는 학급 수 및 아동 수에 따라 지도, 보건위생 및 안전상 필요한 종류 및 수량의 校具 및 敎具 구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

② 전항의 校具 및 敎具는 항상 개선하고 보충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제12조(다른 학교 등의 시설기준 및 설비의 사용)**

중학교는 특별한 사정이 있고 동시에 교육상 지장이 없는 경우는 다른 학교 등의 시설 및 설비를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부 칙**  
(시행기일 등)

1. 이 성령은 2002년4월1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2장 및 제3장의 규정(학교교육법시행규칙(1947년문부성령제11호)제16조의 개정규정을 제외) 및 별표의 규정은 2003년4월1일부터 시행한다.

2. 제2장 및 제3장의 규정 및 별표의 시행 시, 현재 존속하고 있는 중학교의 편제 및 시설·설비에 관하여는 당분간 종전의 관례에 따르는 것이 가능하다.

**(학교교육법시행규칙의 일부 개정)**

3. 학교교육법시행규칙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 중학교의 설비, 편제 그 외 타 설치에 관한 사항은 이 절에 정하는 것 이외에 중학교설치기준(2002년문부과학성령제15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52조를 다음과 같이 바꾼다.

**제52조** 삭제

제65조의3을 동조 제②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①항으로서 다음의 항을 추가한다.

**제65조의3** 중등교육학교의 전과정의 설비, 편제 그 외의 설치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는 중학교설치기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5조의10 제②항 중 「제52조 및」을 삭제한다.

제73조의2의2에 다음의 2개항을 추가한다.

② 맹학교, 농학교 및 양호학교의 중학부에 있어서는 1학급당 교사를 2인 두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

③ 맹학교 및 농학교의 고등부에 있어서는 특수수의 교과를 담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의 교원을 두지 않으면 안 된다.

제73조의16제④항 중 「제52조부터 제52조의3까지」를 「, 제52조의2, 제52조의3」으로 바꾼다.

제73조의 20 및 제73조의 22중 「제①항」을 삭제한다.

별표(제8조 관계)

가. 校舎의 면적

아동수	면적(m <sup>2</sup> )
1인 이상 40인 이하	600
41인 이상 480인 이하	600+6×(학생수-40)
481인 이상	3240+4×(학생수-480)

나. 운동장의 면적

아동수	면적(m <sup>2</sup> )
1인 이상 240인 이하	3600
241인 이상 720인 이하	3600+10×(학생수-240)
721인 이상	8400

고등학교설치기준

1948년1월27일 문부령 1호

최종개정 2002년3월29일 문부성령16호

**제1장 總則**

**제1조** 고등학교설치기준은 이 성령(省令)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조** 공립의 고등학교에 관하여는 道都府현의 교육위원회, 사립의 고등학교에 관하여는 도도부현知事(이하 「도도부현교육위원회등」이라고 함)은 보통과, 농업에 관한 학과, 수산에 관한 학과, 공업에 관한 학과, 상업에 관한 학과 혹은 가정에 관한 학과를 두는 고등학교이외의 고등학교, 또는 2이상의 학과를 두는 고등학교의 편제 및 정비에 관하여 이 성령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또는 그 적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사항에 관하여는 이 성령에 제시된 기준에 기초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도 가능하다.

**제3조** 전공과 및 별과(別科)의 편제 및 설비에 관하여는 그 학과에 따라서 그 성령에 제시하는 기준에 의하지 않으면 안 된다. 단, 이 성령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또는 그 적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관하여는 도도부현교육위원회 등은 이 성령에 규정하는 기준에 기초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제4조** ① 고등학교는 그 교육수준의 향상을 도모하고 당해 고등학교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당해 고등학교의 교육활동 그 외 학교운영의 사항에 관하여 자기점검 및 평가를 수행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노력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전항의 점검 및 평가를 시행함에 있어 동항의 취지에 의거 적절한 항목을 설정하여 시행하는

것으로 한다.

**제4조의2** 고등학교는 당해 고등학교의 교육활동 및 그 외 학교운영의 상황에 관하여 보호자 등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제2장 學科**

**제5조** 고등학교의 학과는 다음과 같이 한다.

- 1. 보통교육을 주로 하는 학과
- 2. 전문교육을 주로 하는 학과
- 3. 보통교육 및 전문교육을 선택이수를 취지로 하여 종합적으로 실시하는 학과

**제6조** ① 전조 제1호에 정하는 학과는 보통과로 한다.

② 전조 제2호에 정하는 학과는 다음과 같다.

농업에 관한 학과 : 농학과, 임학과, 잠업과, 원예과, 축산과, 농업토목과, 농산제조과, 造園과, 여가농업과

수산에 관한 학과 : 어업과, 수산제조과, 수산증식과

공업에 관한 학과 : 기계과, 조선과, 전기과, 전기통신과, 공업화학과, 방직과, 염색과, 토목과, 건축과, 채광과, 야금과, 금속공업과, 목재공업과, 금속공업과, 요업과

상업에 관한 학과 : 상업과

가정에 관한 학과 : 피복과, 食物과

후생에 관한 학과

상선에 관한 학과

외국어에 관한 학과

미술에 관한 학과

음악에 관한 학과

③ 전조 제3호에 정하는 학과는 종합학과라고 한다.

④ 그 외 전문교육을 실시하는 학과로서 적당한 규모 및 내용이 있다고 인정되는 학과

**제3장 編制**

**제7조** 동시에 수업을 받는 1학급의 학생 수는 40인 이하로 한다. 단,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경우는 이 수를 초과하는 것이 가능하다.

**제8조** 교육상 필요가 있을 때는 같은 학년의 학과를 달리하는 학생, 또는 학년이 다른 학생을 합반하여 수업을 행하는 것이 가능하다.

**제9조** ① 교감 및 교사의 수는 제1호표 甲에 의해 정하여진 수 이상으로 한다. 단, 그 수가 12

인 미만의 경우는 12인 이상으로 한다.

② 교감 및 교사 중 그 반수 이상은 다른 職을 겸직하지 않고 또 다른 職으로부터 겸직하지 않은 자가 아니면 안 된다.

**제10조**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前條의 교사는 그의 3분의 1이내의 범위에서 준교사를 두고 이것으로 대신하는 것이 가능하다.

**제11조** ① 사무직원의 수는 학생수 120인 이하의 고등학교에 있어서는 2인 이상으로 하고 학생수가 120인을 넘는 경우는 240인이 추가 될 때마다 1인 이상을 증원하지 않으면 안 된다.

② 정시제의 과정에 있어서는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당수의 사무직원을 두지 않으면 안 된다.

**제12조** 고등학교에는 교장, 교감, 교사, 사무직원 외에 실습조수 및 양호교사, 그 외 학생의 양호를 담당하는 직원을 두지 않으면 안 된다.

**제13조** ① 실습조수의 수는 학생 수 120인 이하의 경우는 2인 이상으로 하고 120인을 초과하는 경우는 120인을 초과할 때마다 1인 이상을 두지 않으면 안 된다.

② 전항 외에 농업, 수산 또는 공업에 관한 학과에 있어서는 1학과마다 2인 이상을 두지 않으면 안 된다.

③ 정시제의 과정에 있어서는 전②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상당수의 실습조수를 두지 않으면 안 된다.

**제14조** 고등학교에는 학생의 양호를 담당하는 직원1인 이상을 두고 그 중의 1인은 다른 職을 겸하지 않고 또는 다른 職으로부터 겸직하지 않은 자가 아니면 안 된다.

**제15조** 삭제

**제4장 設備**

**제16조** 校舍는 견고하여 학습상, 보건위생상 및 관리상 적절한 것이 아니면 안 된다.

**제17조** 교지, 운동장, 교사 그 외의 면적에 관한 기준은 제2호 표에 의한다.

**제18조** 야간에 한하여 수업을 시행하는 고등학교의 교지 및 운동장의 면적은 전조의 규정에 의하지 않아도 된다.

**제19조** ① 校舍에는 다음에 열거하는 시설을 구비하고 동시에 그 시설은 항상 개선되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 단, 어쩔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

로 교육상 지장이 없을 때에는 한 개의 시설을 갖고 두 개 이상으로 겸용하여도 무방하다.

1. 교장실, 회의실, 교원실, 사무실
2. 상당수의 보통교실(보통교실과 특별교실과의 합계 수는 적어도 동시에 수업을 시행하는 학급의 수보다 적어서는 안 된다.)
3. 지리역사과 공민과 교실 및 그 표본실
4. 물리, 화학, 생물, 지학의 각각의 실험실, 표본실 및 준비실
5. 음악교실, 도면교실, 제도교실, 공작교실 및 각각의 준비실 및 서도교실,
6. 도서실, 강당, 체육관
7. 교원연구실
8. 보건실, 휴양실

② 전문교육에 필요한 시설의 기준은 제3호 표에 의한다.

**제20조** ① 고등학교에는 학습용, 체육용 및 보건 위생용의 도서, 기계, 기구, 표본, 모형, 그 외 교구를 구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

② 전항의 교구는 학습상, 보건위생상, 유효 적절한 것으로 동시에, 항상 개선하여 보충되어 있지 않으면 안 된다.

**제21조** 제19조의 교실, 실험실 및 실습시설에는 동시에 수업을 받는 한 학급의 학생이 학습하는데 필요한 상당의 교구 그 외의 설비를 구비하여 놓지 않으면 안 된다.

**제22조** 고등학교에는 학교의 규모에 따라 보건 위생상 필요한 급수설비를 구비하고 그 수질은 위생상 무해한 것이 증명된 것이 아니면 안 된다.

**제23조** 고등학교에는 학교의 규모에 따라 방화 및 소화에 필요한 설비를 구비하여 놓지 않으면 안 된다.

**제24조** 야간에 수업을 실시하는 고등학교에는 학생 수에 따라 필요한 급식시설을 구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제25조** 야간에 수업을 실시하는 고등학교의 도서실 및 교실의 책상면 및 흑판면의 조도는 50룩스 이하로 내려가서는 안 된다.

**제26조** 고등학교에는 필요에 따라 가능한 한 다음의 시설을 두지 않으면 안 된다.

1. 학생 집회소
2. 풀
3. 기숙사
4. 급식시설

5. 학교농원
6. 직원주택

**附則**

**제27조** 이 省令은 공포일로부터 이것을 시행한다.

**제28조** ① 정시제의 과정만 둔 고등학교를 설치하는 경우 또는 이 성령 시행 시 현재 존속하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학교가 고등학교로 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제7조, 제9조 제①항 및 제19조에 규정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당분간 제29조부터 제31조까지의 규정에 의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 있어서 제10조, 제11조, 제13조, 제17조 및 제24조에 규정한 사항에 관하여는 당분간 이것에 의해 없어도 무방하다.

**제29조** 동시에 수업을 받는 한 학급의 학생 수는 50인 이하로 한다.

**제30조** ① 교원의 수는 제1호표 乙에 의해 정해진 수를 미달해서는 안 된다. 단, 그 수가 12인 미만인 경우는 12인 이상으로 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도도부현교육위원회 등은 동항에 규정하는 교원 수를 변경하는 것이 가능하다.

**제31조** ① 校舍에는 적어도 다음에 열거하는 시설을 구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 단, 어쩔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로 교육상 지장이 없을 때에는 하나의 시설을 가지고 2이상으로 겸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1. 교장실, 회의실, 교원실, 사무실
2. 동시에 수업을 받는 학급의 수와 동등이상의 교실
3. 이과실험실
4. 도서실
5. 보건실 겸 휴양실

② 전문교육에 필요한 시설의 기준은 제4호 표에 의한다.

**제32조** 戰災 그 외 어쩔 수 없는 사정에 의해 전조의 규정에 적합치 않은 학교에 대하여는 도도부현교육위원회 등에 있어 고등학교로서 인정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한 경우는 도도부현교육위원회 등은 동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5년 이내에 동조에 규정하는 시설을 구비하는 조건으로 이를 인가하는 것이 가능하다.

附則(2002년3월29일省令제16호)

(시행기일)

1. 이 省令은 2002년4월1일부터 시행한다.

(학교교육법시행규칙의 일부개정)

2. 학교교육법시행규칙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 고등학교의 설비, 편제, 학과의 종류 그 외 설치에 관한 사항은 이 절에 정하는 것 이외에 고등학교설치기준(1948년문부성령제1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64조제2항 중 「(학과의 종류에 관계하는 것을 제외)」를 「(설비 및 편제에 관계하는 것에 한 한다.)」로 바꾼다.

제65조의3제2항 중 「및 학과의 종류」를 「, 학과의 종류 그 외 설치에 관한 사항」으로 바꾼다.

제1호표 甲[제9조]

(1) 학생 수 360인 이하의 학교에 있어서는

$$\frac{(\text{학생수}) \times (\text{주당 수업시간})}{40 \times 15}$$

(2) 학생 수 360인을 초과하는 학교에 있어서는

$$\frac{(\text{학생수}) \times (\text{주당 수업시간})}{40 \times 18}$$

단, (2)에 의한 수가 通常과정의 경우에 19이하의 경우는 21인 이상

19를 넘어 22미만의 경우는 22인 이상으로 하고 야간에 있어서 수업을 실시하는 과정의 경우는 14이하 경우는 15인 이상

14이상 16미만일 경우 16인 이상으로 한다.

정시제의 과정(야간에 수업을 실시하는 과정을 제외한다. 이하 동일)에 있어서는 (1)(2)에도 불구하고 주당 수업총시수 300시간이하의 경우는 이것을 15로, 300시간을 초과할 경우는 18로 나눈 수치 이상으로 하고 다음의 통상의 과정에 관한 단서의 부분을 이것으로 적용한다.

(3) 농업, 수산 또는 공업에 관한 학과에 있어서는 (1)또는(2)외에 학생 수 120인 까지 또는 이것을 초과하여 120인을 더 할 때마다 다음의 수를 증원하지 않으면 안 된다.

농업 또는 수산에 관한 학과 1인 이상

공업에 관한 학과 2인 이상

(4) (1) 혹은 (2) 및 (3)외에 1학과를 추가할 때마다 2인 이상을 증원하지 않으면 안 된다.

(5) 정시제의 과정에 있어서는 (3) 및 (4)에도 불구하고 학과의 종류와 수에 따라 상당수를 추가하는 것으로 한다.

(註)(1) 및 (2)의 주당 수업시간수와

통상의 과정에 있어서는 34

야간에 수업을 시행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24

제1호표 乙[제30조]

(1) 학생 수 300인 이하의 학교에 있어서는

$$\frac{(\text{학생수}) \times (\text{주당 수업시간})}{50 \times 12}$$

(2) 학생 수 300인 이상 750인 이하의 학교에 있어서는

$$\frac{(\text{학생수}) \times (\text{주당 수업시간})}{50 \times 15}$$

(3) 학생 수 750인을 초과하는 학교에 있어서는

$$\frac{(\text{학생수}) \times (\text{주당 수업시간})}{50 \times 18}$$

단, (2)에 의한 수가 통상의 과정의 경우는

15 이하의 경우는 17인 이상

15를 초과하여 17 이하일 경우 18인 이상

17을 초과하여 19 미만일 경우 19인 이상

야간에 수업을 실시하는 과정의 경우는

10 이하의 경우는 12인 이상

10을 초과하여 12 이하일 경우 13인 이상

12을 초과하여 14 미만일 경우 14인 이상으로 하고

(3)에 의한 수가 통상의 과정의 경우

30 이하의 경우는 30인 이상

30을 초과하여 33 이하일 경우 35인 이상

33을 초과하여 36 미만일 경우 36인 이상

야간에 수업을 실시하는 과정의 경우는

21.5 이하의 경우는 24인 이상

21.5를 초과하여 24 이하일 경우 25인 이상

24를 초과하여 26 미만일 경우 26인 이상으로 한다.

정시제의 과정에 있어서는 (1),(2),(3)에도 불구하고 주당 수업총시수 500시간 이하의 경우는 이것을 15로, 500시간을 초과할 경우는 이것을 18로 나눈 수 이상으로 하고 다음의 통상의 과정에 관한 단서의 부분을 이것 에 적용한다.

(4) (1),(2) 혹은 (3)외에 농업, 수산 또는 공업에 관한 학과에 있어서는 1학과를 두는 경우에는 2인 이상, 2학과 이상 1학과를 초과할 때마다 1인 (공업에 관한 학과에 있어서는 2인)이상을 증가하



지 않으면 안 된다.

(5) 정시제의 과정에 있어서는 (4)에도 불구하고 학과의 종류와 수에 따라 상당수를 추가하는 것으로 한다.

(6) (1)부터(4)까지 외에 농업, 수산 또는 공업에 관한 학과에 있어서는 실습에 필요한 상당수의 교원을 두지 않으면 안 된다.

(註)(1) 및 (2)의 주당 수업시간 수는 本 表 甲의(註)와 같다.

**제2호표 [제17조]**

1. 교지, 운동장 및 교사의 학생 1인당 면적 표준

(단위 : m<sup>2</sup>)

학과별	교지면적	운동장 면적	교사바닥 면적
보통과를 두는 고등학교	70	30	10
농업에 관한 학과를 두는 고등학교	110 (실습지 비포함)	30	20
수산에 관한 학과를 두는 고등학교	110 (실습지 비포함)	30	20
공업에 관한 학과를 두는 고등학교	110 (실습지 비포함)	30	20
상업에 관한 학과를 두는 고등학교	70	30	10
가정에 관한 학과를 두는 고등학교	70	30	10

※운동장 전 면적이 15,000m<sup>2</sup> 이하여서는 아니됨

2. 농업에 관한 학과의 실습지 학생1인당 면적 표준

학과	면적(m <sup>2</sup> )
농학과(연습립의 면적을 포함하지 않는다)	250
임업과 발 연습립(대나무림 및 건본림을 포함)	50 4,800
잡업과	200
원예과, 농업제조과	200
농업토목과	100
축산과	300
造園과	200
여자농업과	100

**제3호표 [제19조], 제4호표 : 생략**